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0. . .
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('20. 6. 15 예정)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 책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25원에서 22원으로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[별표2] 허가대상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정 (당초: 25원 → 변경: 22원)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 2]

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
(제9조제1항 관련)

시 설 별	부과기준	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처리시설 사용료
허가대상	1 L	30원	8원	22원
신고대상	1 L	28원	8원	20원
신고미만	1 L	18원	8원	10원